

##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22호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3일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 이유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대상을 완화하고, 진단보고서 품질평가를 의무화하기 위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건강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진단 신청대상 확대 및 제한기업 요건 완화(안 제6조1항, 별표 제1호)

- 취약기업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건강관리 신청대상 확대

현 행	개 선
삼시근로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회생인가 기업 및 재창업자금 용자기업 등 재기중소기업에 대해 진단신청 제한요건 완화

현 행	개 선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

#### 나. 진단전문가 평가 실시 의무화 조항 신설(안 제10조의2)

- 진단기관은 진단완료 직후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우수 전문가 선정 및 불성실 전문가 제재수단으로 활용하도록 근거 마련

#### 다. 기타 행정처리 기한·주기 등 개선

- 매월 건강관리위원회 개최시기가 월말에 개최되는 점을 고려, 지원기관의 매월 치유사업 지원실적 제출기한을 매월 5일에서 10일로 개선
- 관리기관(지방청 건강관리팀)의 행정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진단기업의 치유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 위원회 보고에서 반기별로 변경

### 3. 의견제출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재도전성장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 서구 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전화 : 042-481-8965, Fax : 042-481-6849)

#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b>제4조(위원회) ①~② (생 략)</b></p> <p>③위원회는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 7. (생 략)</p> <p>8. 지방청 <u>창업성장지원과장</u></p> <p>9. (생 략)</p> <p>④ ~ ⑤ (생 략)</p>	<p><b>제4조(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b></p> <p>③위원회는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지방중소기업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p> <p>1. ~ 7. (현행과 같음)</p> <p>8. 지방청 건강관리 업무 담당 과장</p> <p>9.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b>제6조(신청대상) ①</b>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 제2호)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진단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일시적 경영애로 또는 기업성장통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한다.</p> <p>② (생 략)</p> <p> </p> <p><u>&lt; 신 설 &gt;</u></p>	<p><b>제6조(신청대상) ①</b>진단신청일 현재 진단신청 대상 업종(별표 제2호)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 </p> <p><b>제10조의2(전문가 평가 실시) ①</b>진단기관은 전문가가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직후에는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전문가 평가결과는 우수 전문가 선정 및 불성실 전문가 제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p>
<p><b>제15조(맞춤형 치유) ① ~ ③ (생 략)</b></p> <p>④지원기관은 맞춤형 치유사업 지원 실적(전월말 기준)을 매월 5일까지 기업건강관리팀에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p>	<p><b>제15조(맞춤형 치유) ① ~ ③ (현행과 같음)</b></p> <p>④지원기관은 맞춤형 치유사업 지원 실적(전월말 기준)을 매월 10일까지 기업건강관리팀에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p>
<p><b>제16조(사후관리) ① (생 략)</b></p> <p>1. (생 략)</p> <p>2.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자체 치유과제의 추진상황을 매분기 위원회에 보고</p> <p>3. ~ 5.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b>제16조(사후관리) ① (현행과 같음)</b></p> <p>1. (현행과 같음)</p> <p>2.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자체 치유과제의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p> <p>3.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b>제21조(존속기한) ① (생 략)</b></p> <p>②제5조의2제3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환경·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한은 2014년 7월 9일까지로 한다.</p>	<p><b>제21조(존속기한) ① (현행과 같음)</b></p> <p>②제5조의2제3호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지원센터에서 환경·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한은 2015년 4월 5일까지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b>[별표 제1호] 진단 신청 제한 대상</b></p> <p>1.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치유를 받은 횟수가 4회 이상인 기업.</p> <p>2. ~ 4 (생략)</p> <p>5.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제외한다.</p> <p>6.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매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p> <p>7. ~ 8. (생략)</p> <p>[별지 제1호]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lt; 6페이지 참조 &gt;</p>	<p><b>[별표 제1호] 진단 신청 제한 대상</b></p> <p>1.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치유를 받은 횟수가 4회 이상인 기업. 단, <u>처방전 추가 발급 추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한다.</u></p> <p>2. ~ 4. (현행과 같음)</p> <p>5.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u>희생인가 받은 기업 및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한다.</u></p> <p>6.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매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단, <u>희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 기업은 제외한다.</u></p> <p>7. ~ 8. (현행과 같음)</p> <p>[별지 제1호]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lt; 7페이지 참조 &gt;</p>

〈 소관 부서명 〉

중소기업청 제도전성장과	
연 락 처	(042) 481 - 8965